

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안내

【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】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·운용(임대)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.

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

□ 제출 의무자

- 신고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
 - (해외직접투자자)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를 한 거주자 (외국법인 지분 10% 이상 소유 & 투자금액 1억원 이상, 외국법인의 지분 10% 이상 직·간접 소유 &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자)
 - (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자)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취득 후 투자운용(임대)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

□ 제출대상 자료 (=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)

- 해외직접투자자 :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, 손실거래명세서,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- 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자 :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

□ 제출 시기

-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(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)까지

□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

- (과태료 부과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와 미(거짓)제출한 자 중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(보완)요구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 [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: 1천만원 이하,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 : 취득가액의 1% 이하 (5천만원 한도)]

자료제출 및 과태료 부과 대상

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

- (대상자)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

자료제출 대상자	제출서류
가.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(대부투자 포함)한 거주자	①
나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	①, ②
다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직·간접 소유하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	
라. 위 “다” 투자자 중 손실거래금액*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	①, ②, ③
마.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, 개인사업체,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에 투자한 거주자	④
바.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	⑤
사.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(임대포함)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	

< 제출서류 목록 (=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) >

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	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
③ 손실거래명세서*	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 명세서	

* 손실거래금액 : 「소득세법」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 원 이상이거나,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[특정 자산 매입·처분, 부채 인식·평가·상환 및 증자 등과 관련된 손실금액 (일반적인 상거래의 손실 제외)]

□ 미(거짓)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

-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경우 : 최초 과태료 부과
- 세무서장이 미(거짓)제출한 거주자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(보완)요구한 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경우 : 추가 과태료 부과